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68
----------	-------

발의연월일 : 2026. 8. 5.

발 의 자 : 조지연 · 강명구 · 김승수
이달희 · 김소희 · 김성원
박수영 · 김은혜 · 임이자
윤용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국적으로 일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하고, 서울에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음. 폭염 발생 빈도와 지속기간이 증가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또한, 냉방이 필수적인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의 운영 부담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전통시장 상인과 농축산업 종사자는 생업을 위해 냉방기기를 지속 가동할 수밖에 없어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가중됨.

그러나 현행법에는 폭염 등 기후재난 상황에서 전기요금 감면 지원 및 이로 인한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 보전을 위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이 지속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

요금 감면 또는 누진제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국가가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자연재난 시 전기요금의 감면 등) ①전기판매사업자는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 중 폭염경보(폭염중대경보를 포함한다) 또는 한파경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발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요금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같은 조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상점가에서 사업을 하는 자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축산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축사에서 가축사육업을 영위하는 자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6호에 따라 전기요금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그 밖에 재난 대응 및 공익상 전기요금 감면이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 감면 등에 필요한 비용 및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감면 기준, 기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7조의3(자연재난 시 전기요금의 감면 등) ①전기판매사업자는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 중 폭염경보(폭염중대경보를 포함한다) 또는 한파경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발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요금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u> <u>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u> <u>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u> <u>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u> <u>4.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u> <u>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u>

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같은 조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상점가에서 사업을 하는 자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축산법」 제2조 제8호의2에 따른 축사에서 가축사육업을 영위하는 자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6호에 따라 전기요금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그 밖에 재난 대응 및 공익상 전기요금 감면이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 감면 등에 필요한 비용 및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 기준, 기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